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 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함(안 제9조제2항제1호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인용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